

[사 건 명] 행심 2018 - 22

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『서면사과』 처분 취소 청구

□ 청구인 : ◇◇◇

□ 피청구인 : ○○학교장

[주 문]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.

[재결이유]

## I. 사건개요

가. 청구인은 ○○등학교 학생으로 2018. 4. 13. 발생한 같은 반 학생 ○○○(피해학생)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, 2018. 4. 26.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처분 조치 하였다.

나.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, 2018. 5. 17.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.

## II. 청구인의 주장

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.

가. 청구인은 ○○○에게 단 두 차례 ‘미쿠짱 찌찌뽕, 미쿠짱 똥냄새’란 말을 하였을 뿐이다. 평소 친하게 장난을 자주 쳤던 사이였고 이날도 서로 장난치며 친해지려는 의도로 한 말이었기 때문에 ○○○가 흥분하여 의자를 집어 던지고 떡살을 잡을 정도로 화를 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.

나. ○○○는 ‘찌찌뽕’이라는 말이 성희롱 발언이라고 주장하나, ‘찌찌뽕’이란 단어는 여럿이 있을 때에 같은 말을 동시에 내뱉을 경우 사용하는 말로 성적 의미와 관련이 없다.

다. 청구인과 ■■■■은 ○○○가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하였고, 카톡으로도 다시 사과하여, 서로 화해하였다. 그런데 청구인과 ■■■■만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처분하고, 물리적 폭력까지 사용한 ○○○에게는 아무런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.

라. 청구인은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어 자해를 하는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. 이번 일로 크게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살펴주기를 바란다.

### Ⅲ. 피청구인 주장

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가. 청구인이 일부러 복도에 나가 ○○○를 놀린 것은, ○○○가 싫어하는 것을 잘 알면서 놀리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볼 수 있다.

나. ‘찌찌뽕’이라는 단어는 어감상 ‘미쿠’라는 여성 캐릭터와 결합하여 성적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.

다. ‘미쿠’는 ○○○가 수업 시간에 발표도 할 만큼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이고, ○○○가 ‘미쿠’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, 청구인과 △△△이 ○○○를 향해 ‘미쿠짱 똥냄새’라고 말한 것은 ○○○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.

라. ○○○가 청구인과 △△△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△△△의 떡살을 잡는 행동을 하였으나, 이는 청구인과 △△△이 ○○○를 놀려 유발한 것이고, 이로 인해 누군가 맞거나 다치지 않는 것이다.

마. 청구인은 화해했다고 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고,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 처분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,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에 따라 가장 낮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.

#### IV.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

##### 1. 처분근거 법령

가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7조

나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

다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, 제17조

## 2. 인정되는 기초 사실

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, 답변서, 증거자료 및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및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가. 평소 ○○○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‘미쿠’ 라는 인물을 좋아하였고, 미술시간에 ‘미쿠’ 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.

나. 청구인과 △△△은 2018. 04. 13. ○○○에게 ‘미쿠짱 찌찌뽕’, ‘미쿠짱 똥냄새’ 라고 놀렸다.

다. 이에 ○○○는 화가 나서 청구인과 △△△을 쫓아가 의자를 던지고 △△△의 멍살을 잡았다.

## 3.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

### 가.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

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르면 “학교폭력”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협박, 약취, 명예훼손·모욕, 공갈, 강요·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, 따돌림, 사이버따돌림, 정보통신

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, 동법 제3조에 따르면 “가해학생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.

찌찌뽕의 사전적 의미는, 상대방과 둘이 또는 여럿이 있을 때에 같은 말을 동시에 내뱉을 경우 쓰이는 말로, 단순히 어감상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에서 성적인 발언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.

따라서 이 사건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,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, 모욕이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이다.

피청구인은 ‘미쿠’는 ○○○가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 ‘미쿠’를 자신과 동일 시 하고 있으므로 ○○○에게 ‘미쿠짱 찌찌뽕’, ‘미쿠짱 똥냄새’ 라고 말한 것은 ○○○를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○○○는 남학생이고, ‘미쿠’는 여성 캐릭터인 점, ○○○의 별명이 ‘미쿠’는 아니었고 평소 친구들이 ○○○를 ‘미쿠’라고 부르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, ○○○가 단 한번 미술 시간에 자신을 표현하라는 주제로 ‘미쿠’에 대해 발표한 것만으로, ○○○가 여성 캐릭터인 ‘미쿠’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넘어 ‘○○○ = 미쿠’이므로 ‘미쿠’를 놀린 것은 ○○○를 모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.

청구인도 ○○○가 ‘미쿠’라는 캐릭터를 좋아한다고만 알고 있었지, ○○○가 자신을 ‘미쿠’와 동일 시 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다.

단지 청구인이 ●●●가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놀린 것만으로는, ●●●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,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, 그 밖의 학교폭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.

## 나. 결론

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, 이 사건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## V. 결 론

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.(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.)